

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

제정	2012.03.01.
개정	2017.09.25.
개정	2017.12.11.
개정	2018.03.20.
개정	2020.06.15.
개정	2022.02.07.
개정	2023.04.03.

1. 관련근거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18조(편입학), 제28조(교과이수단위),
제28조의 4(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)①항,
제35조(졸업 및 수료)

학칙시행세칙 제5조(편입학), 제37조(졸업 및 수료), 학점인정 심의 규정 제32조(심의 대상 및 심의적용범위)

2. 편입 구분 (개정 2023.04.03.)

구 분		지원자격	최대 인정학점
1학년 2학기 편입	국내대학 출신	① 전문대학 졸업자, 4년제 대학교 졸업자	불인정
	외국대학 출신	① 외국에서 수학한 자	
2학년 편입	국내·외대학 출신	①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(자퇴) 후 1년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(사이버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	35학점 이하
	학점은행제 (시간제등록) 학습자	① 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” 및 “평생교육법”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	

3학년 편입	국내·외대학 출신	①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(자퇴) 후 1년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(사이버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	70학점 이하
	학점은행제 (시간제 등록) 학습자	① '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' 및 '평생교육법'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	

3. 편입학 학점 인정 기준

- 가. 전적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편입스쿨(전공)의 학점인정은 해당 스쿨(전공)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
- 나. 편입학한 스쿨의 전공과목과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, 스쿨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도 있다.
- 다.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에 따라 수업연한 내에 교과구분별(전공, 교양 등)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- 라.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심의규정에 의한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06.15.)
- 마. 편입학 사정 시 편입 학년·학기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까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기개시 후 30일 이내에 학점인정심의 신청자에 한해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전공 학점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한다. 단,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심의는 편입학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1회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2.2.07.)
- 바. 편입학 학점 인정 절차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사. 편입학 세부 학점 인정 기준 (개정 2023.04.03.)

편입 학년·학기	편입학 사정 시점	학점인정심의 시점
1-2	-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(학점인정심의 신청 미대상) -우리대학의 전공 및 교양 학점 졸업이수 기준 준수	
2-1	-일반선택으로 최대 35학점 인정 -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 -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	학점인정심의 신청자에 한해 최대 35학점 내에서 이수구분 심의(전선, 일선)
3-1	-일반선택으로 최대 70학점 인정	학점인정심의 신청자에 한해

-우리대학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 준수	최대 70학점 내에서 이수구분 심의(전선, 일선)
-우리대학 교양과목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	

4. 편입학 학점 인정 관련 서류 (개정 2020.06.15.)

- 가. 편입학 학점인정표
- 나. 전적대학 성적증명서
- 다. 전적대학 졸업증명서(수료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증명서)
- 라. 스쿨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표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2022학년도 1학기 편입학대상자부터 소급적용한다.